

헤나킹 정보공개서

(주)자연가득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자연가득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폭읍 오폭로 736-16
- 대 표 전 화 : 02-568-8885
- 팩 스 : 02-412-7467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부 02-568-888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X. 기타 첨부서류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 <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 <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자연가득	헤나킹 외 3개		경기도 광주시 오폭읍 오폭로 738-16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8. 03 .13.	2009. 02. 16.	오 상 희	02-568-8885	02-412-7467
	법인등록번호	134211-0092984	사업자등록번호	126-86-1848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대표이사	오 상 희	헤나킹 외 3개	오 상 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 소
	02-568-8885	02-412-7467	경기도 광주시 오폭읍 오폭로 738-16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 사	박 영 업	헤나킹 외 3개	오 상 희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 소
	02-568-8885	02-412-7467	경기도 광주시 오폭읍 오폭로 738-1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헤나킹』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헤나킹	『헤나킹』은 '신이 주신 자연의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난 인도북서부 지역의 엄선된 식물성 헤나(Henna)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브랜드로 각종 유해물질과 케미컬 사용으로 찌들어 있는 모발을 볼륨감 있고 윤기 흐르는 탄력 있는 모발로 만들어

		주어 모발을 보호하고 두피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제품으로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는 『헤나킹』의 연구·노력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 호	헤나킹 000점	가맹점명은 개점 전까지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서비스표		p3~4 참조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820,845	511,377	3,309,468	4,796,605	-198,314	-172,462
2022년	4,028,889	471,301	3,557,588	5,106,615	152,075	248,120
2023년	3,918,236	407,251	3,510,985	3,981,508	-51,368	-46,603

※ 근거자료로 재무제표가 [별첨 1]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경력		담당 업무
			기 간	직 위	
가맹사업 관련 임원	오 상 희	대표이사	2020. 01. 01. ~ 현재	(주)자연가득 대표이사	총괄 업무
	박 영 엽	이 사		(주)자연가득 이사	경영관리 업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시 점	임원 수		직원 수
	상 근	비상근	
2023년 12월 말 기준	2	-	1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관 계	상 호	구 분	기 간	사업 내용
당 사	(주)자연가득	가맹사업 경영	2020. 01. 01. ~ 현재	『돌깨마을 땃돌순두부』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업(등록번호 20100100206)
				『오라이 숯불닭갈비』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업(등록번호 20100100304)
				『삼육오 족발찜닭』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업(등록번호 20140104)
			2021. 04. 01. ~ 2023. 03. 26.	『돌깨마을 참도시락』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업(등록번호 20213760) /2023. 03. 27. 정보공개서 자진 취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

이미지			
명 칭	HENNAKING	권리내용	상표(3류)/서비스표
출원일 및 등록일	출원 2013. 04. 01 등록 2014. 04. 11.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출원 4020130020370 등록 4010326270000
등록권리자	(주)자연가득	등록만료일	2034. 04. 11.

(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 주의하여야 합니다.

(2)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최초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3년 5월 15일

다만, 당사는 2015년 05월 04일 『헤나킹』 가맹사업을 종료한 후 2019년 09월 01일부터 다시 가맹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2. 『헤나킹』의 연혁

(단위 : 년. 월. 일)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자연가득	헤나킹	오 상 희	2010. 01. 21. ~ 2014. 09. 02.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738-16
		박 영 엽	2014. 09 .03. ~ 2019. 01. 24.	
		이 한 용	2019. 01. 25. ~ 2021. 08. 09.	
		오 상 희	2021. 08. 10. ~ 현재	
비 고	당사는 2015. 05. 04. 『헤나킹』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자진 취소하였으며 가맹사업을 종료함.			

3. 『헤나킹』의 업종

영업표지	업 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헤나킹	기타 도소매	염색약, 헤어용품, 화장품, 세안 및 바디용품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헤나킹』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년. 월. 일/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	-	-	-	-	-	-	-	-
서 울	-	-	-	-	-	-	-	-	-
부 산	-	-	-	-	-	-	-	-	-
대 구	-	-	-	-	-	-	-	-	-
인 천	-	-	-	-	-	-	-	-	-
광 주	-	-	-	-	-	-	-	-	-
대 전	-	-	-	-	-	-	-	-	-
울 산	-	-	-	-	-	-	-	-	-
세 종	-	-	-	-	-	-	-	-	-
경 기	-	-	-	-	-	-	-	-	-
강 원	-	-	-	-	-	-	-	-	-

충 북	-	-	-	-	-	-	-	-	-
충 남	-	-	-	-	-	-	-	-	-
전 북	-	-	-	-	-	-	-	-	-
전 남	-	-	-	-	-	-	-	-	-
경 북	-	-	-	-	-	-	-	-	-
경 남	-	-	-	-	-	-	-	-	-
제 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헤나킹』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 도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 말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	-	-	-	-	-

6. 『헤나킹』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헤나킹』 외에도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월. 일/개)

관 계	상 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 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당 사	(주)자연가득	돌깨마을 맷돌순두부	20080100262	한식	29/1	25/1	24/1
		오라이 숯불닭갈비	20100100304		3/0	3/0	3/0
		삼육오 족발찜닭	20140104		7/0	6/0	5/0
		돌깨마을 참도시락	20213760	한식	0/1	0/1	-
비 고		2023. 03. 27. 『돌깨마을 참도시락』 정보공개서 자진 취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2023년도에 『헤나킹』 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단위 :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 소수점 이하 반올림, VAT 별도)

지 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비 고
		연간 평균 매출액		상 한		하 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 한	면적 3.3m²당	하 한	면적 3.3m²당	
전 체	-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세 종	-							
경 기	-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8. 『헤나킹』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는 2023년도에 『헤나킹』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단위 : 개, 일)

연 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관리 지역	상호/명칭	주 소			
전 국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221 서림상가 3층			
	대표자	연락처		관리가맹점수	
	오 상 희	02-568-8885		0	
	당사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지사 폐지 시까지	0	0	0	

10. 광고·판촉 지출내역

당사가 2023년에 『헤나킹』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한 광고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 VAT 미포함/년)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			비 고
			합 계	가맹본부	가맹점	
-	-	-	-	-	0	2023. 기준



소 계	-	-	-	
합 계	-	-	-	

11. 가맹금 예치기관

- (1)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 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영업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태영빌딩	02-785-0025

- (2)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서 작성일]에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자연가득]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① 귀하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당사에 지급됩니다.**
-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귀하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귀하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귀하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③ ②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당사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법』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나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비	5,500	계약체결일
신규교육비	1,100	
총 계	6,600	
반환 조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귀하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귀하는 당사에 가맹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영업지역권 부여, 가맹점 운영권 부여, 교육수료 등의 경우	
비 고	신규교육비는 점당 1인 교육	

2) 보증금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보증금	2,000	계약체결일	가맹금 미지급 등
비 고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가맹비	5,500	
신규교육비	1,100	
보증금	2,000	VAT 제외
총 계	8,6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총 금 47.075천원(VAT 포함, 추가비용 제외)으로 당사에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 : 49.59㎡ (구 15평)/단위 :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 VAT 포함]

(1) 인테리어비용, 간판비용 및 POS비용(무점포가맹사업의 경우 인테리어비용 및 간판비용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인테리어비용	간판비용	POS비용
지급대상	귀하가 선정한 자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 [협력업체 등]	당사가 지정하는 자 (협력업체)	당사가 지정하는 자(협력업체)
금 액	33,000	2,745	3,080
면적 33㎡당 금액	2,200	183	-
지급기한	분납제도 참조(p12)		
반환조건	공사 전 계약의 취소		공급 전 계약의 취소
비 고	기준금액은 인건비, 원자재 수급, 물가변동, 매장의 크기, 설치비 등의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집기비품은 필요에 따라 가맹점이 별도 구입/추가비용(매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일정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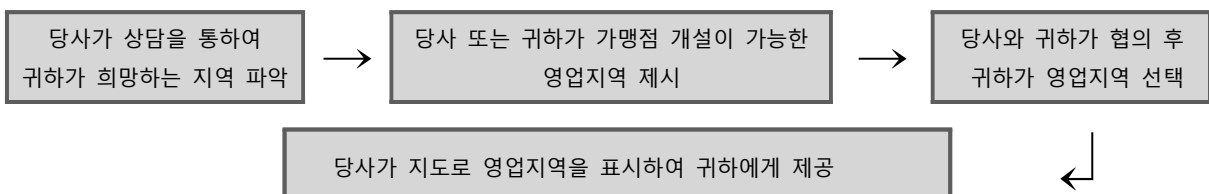
(2) 판촉비, 초도상품 대금 및 공사감독비용(무점포가맹사업의 경우 공사감독비용 해당사항 없음)

구 분	판촉비	초도상품대금	공사감독비용
지급대상	당사		
금 액	2,200	1,100	4,950
면적 33㎡당 금액	-	73	330
지급기한	계약체결일	인테리어 등의 중도금 지급일	인테리어 등의 잔금 지급일
반환조건	판촉행사 미제공의 경우	상품 미공급의 경우	공사 전 계약의 취소
비 고	기준금액은 매장의 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영업지역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헤나킹』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을 유의하십시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을 받기위한 기준	계약·채용 기준
귀하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 등이 아닐 것
종업원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귀하가 『해나킹』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무점포가맹사업의 경우 인테리어, 간판은 해당 사항 없음).

자세한 내역은 가맹계약체결 후 귀하에게 별지로 제공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귀하가 인테리어 비용 등의 개설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착수금	중도금	잔 금
금 액	총 공사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총 공사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총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시기	계약서 작성일	공사 착수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가맹사업 개시 3일 전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1) 정기지급금, 교육비 및 자연이자



구 분	정기 지급금	교육비	지연 이자
지급 대상	당 사		
금 액	매월 165	p30 참조	년 20%
지급 기한	매 익월 10일	교육비를 통지받은 후 지급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반환 조건	-	교육 미이수의 경우	
반환할 수 없는 사유	-	교육 이수의 경우	
비 고	정기지급금은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금액이며, 최초 가맹사업 개시일이 1일 이후인 경우 일수로 환산하여 정기지급금을 책정함.		

(2) 광고·판촉 분담금, 상품비용 및 POS사용료

구 분	광고·판촉 분담금	상품 비용	POS 사용료
지급 대상	당 사		협력업체
금 액	p24 참조	발주상품에 따라 금액 지급	매 11
지급 기한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정산 후 5일 이내 지급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다름
반환 조건	행사를 미실시한 경우	품질의 하자	
반환할 수 없는 사유	행사를 실시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품질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영업표지 변경비용 및 점포환경개선비용(무점포가맹사업의 경우 일부 영업표지 변경비용 및 점포 환경개선비용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영업표지 변경비용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급 대상	귀하가 선정한 보험회사	귀하가 직접 선정 또는 협력업체 등	
금 액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다름	p28-29 참조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할 수 없는 사유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2023년도에 『헤나킹』 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맹점이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인 “차액 가맹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단위 : 천원, 천원 이하 반올림(%/년))

구 분	내 용	기준일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금액	-	2023. 기준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비 고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귀하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가맹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위반 시 책임
고객 서비스상태 관리	고객 서비스상태 점검	년 2회	상품공급중단 /계약해지 등
품질기준 및 상품관리	당사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및 상품 점검		
위생 점검	위생상태 점검		
재고관리	실재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점검		
매출관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누락 등에 매출 점검		
각종 설비관리 등	각종 설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자세한 사항은 『헤나킹』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헤나킹』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헤나킹』가맹점사업자에게 ① 가맹사업 양도에 대한 통지 및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② 귀하는 정해진 기간까지 양도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에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귀하가 정해진 기간까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양도를 승인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과 새로운 『헤나킹』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당사의 『헤나킹』가맹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④ 양도를 거절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헤나킹』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당사의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① 당사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헤나킹』가맹점사업자에게 새로운 영업표지를 마련하여 통지하고 동의여부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② 귀하는 정해진 기간까지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에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귀하가 정해진 기간까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귀하를 포함한 모든 『헤나킹』가맹점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새로운 영업표지로 변경(p28~29 참조)하여야 하며 ④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당사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헤나킹』가맹점사업자에게 새로운 영업표지를 마련하여 통지하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영업표지에 대하여 거절한 『헤나킹』가맹점사업자와는 가맹계약 해지 및 정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헤나킹』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나킹』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대표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사유 제외)으로 당사가 『해나킹』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① 당사는 귀하를 포함한 모든 『해나킹』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사실 통지하고 ② 당사와 귀하를 포함한 모든 『해나킹』가맹점사업자 간에 협의 후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나킹』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가맹점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나킹』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양도인 부담부분

귀하가 운영하는 『해나킹』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과정에서 귀하가 **당사에 부담하여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당사에 양수도계약에 관한 제반절차에 대하여 대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대행수수료	지급 대상	비 고
	550,000	당 사	

나) 양수인 부담부분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① **귀하의 잔여 계약기간을 승계하거나** ②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귀하의 가맹계약 잔여기간 승계	신규 가맹계약 체결	비 고
가맹비	-	5,500	
이행보증금	2,000	2,000	VAT 제외
교육·훈련비	1,100	1,100	교육·훈련 이수 후 즉시 소멸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당사의 영업표지와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철거하여야 하며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당사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운영매뉴얼 등 모든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게재 중인 광고 등도 철거·회수·삭제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상품(상품, 설비 등)을 당사에 반환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위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을 유념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해나킹』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가 당사와 『헤나킹』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헤나킹』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가맹계약체결 후 귀하에게 별지로 제공합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무점포가맹사업의 경우 인테리어 및 간판은 해당사항 없음).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2023년도에 『헤나킹』가맹점을 개설하지 않아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헤나킹』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으로 수취하는 이익은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귀하로 하여금 상품·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 2) 당사는 귀하로 하여금 상품·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헤나킹』 판매상품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 품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염색약, 화장품, 바디용품 등	① 귀하는 당사가 판매하도록 지정한 상품만을 판매 하여야 함. ②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 을 얻어야 함.	계약해지 등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외에 『헤나킹』 타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귀하가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귀하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이 점을 유의하십시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헤나킹』 판매상품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년, 월, 일)

상품명	단위	권장가격	가격통보 방법	비 고
염색약	100g/530g	15.0. ~ 15.0	홈페이지 공지 등	2023. 12. 31. 기준
화장품	10 ~ 50ml	18.0 ~ 132.0		
바디용품 등	50 ~ 200ml	33.0 ~ 55.0.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은 귀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판매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권장가격은 귀하가 당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시점의 가격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십시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1) 당사(이하 계열회사 포함)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염색약, 화장품, 바디용품 등 판매업	가맹본부	계열회사



	『헤나킹』	-
--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행정동 당 1개 가맹점	계약서 내에 영업지역 표시 및 별지에 지도로 표시
다만,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 상권으로 보며 지역에 따라 설정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음.	계약서 내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가)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영업지역 조정절차

당사가 영업지역을 조정하기 위해 ① 귀하에게 영업지역 조정안 통지서를 보내면 ② 귀하는 당사와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변경을 변경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헤나킹』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에 영업지역 밖의 고객이 방문한 경우 그 고객에게 귀하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다음과 같은 취급점에 귀하가 판매하게 될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 분	영업 표시	취급 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취급점	헤나킹 다대점	헤나킹, 화장품, 바디용품 등	완제품 판매
	헤나킹(명지롯데캐슬)		
	헤나킹 옥동대공원점		

	헤나킹(상남)		
	헤나킹&에덴미용아트 광주북구점		
	헤나킹(도량)		
	헤나킹 양산센터		
	헤나킹 대치센터		
	헤나킹(월평)		
	헤나킹(범물)		
	라피아미용실		
	헤나킹(쌍용)		
	헤나킹(봉천)		
	헤나킹(주안)		
	헤나킹 포항점		
	헤나킹(성포)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점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된 점포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On-line을 통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 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0	100	0	0
비 고	기타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은 취급점에 판매한 매출액 비중임.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 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헤나킹』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간 만료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귀하와의 계약갱신을 거절 또는 종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헤나킹』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갱신 거절사유

- ① 귀하가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귀하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④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⑤ 당사의 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⑥ 당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나) 계약 종료 사유

- ①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②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③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④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⑤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헤나킹』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의 일반해지

(1) 당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귀책사유로 계약체결 후 30일이 지나도 영업개시를 못하는 경우
- ②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③ 당사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장래 채택하거나 획득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 ④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 ⑤ 당사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 ⑥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사상품을 공급받는 경우
- ⑦ 귀하가 2회 이상 상품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 ⑧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하도록 지정된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 ⑨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된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 ⑩ 귀하가 『해나킹』 타가맹점에 공급하거나 甲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등

당사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귀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가 본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영업표지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가맹사업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乙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②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와 약정한 서비스 등의 공급 또는 경영지원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당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당사에 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나) 계약의 즉시해지

당사 또는 귀하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나킹』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 ① 귀하가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⑥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

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 귀하가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 ① 당사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② 당사가 파산 신청한 경우
- ③ 당사가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④ 당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⑤ 당사 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⑥ 천재지변 등으로 당사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계약기간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당사와 귀하의 합의로 계약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양당사자의 기명날인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에서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승인을 얻어 가맹점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헤나킹』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당사의 승인이 존재	귀하가 당사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자가 예비 양수인 면담(15일 가량 소요) → 당사가 귀하에게 양도 승인여부 통지 → 당사와 양수인 간의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훈련 이수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 당사는 귀하의 법적 상속인의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 가능 조건	상속 절차	비 고
법적 상속인인 경우 가능	상속인이 당사에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자가 상속인 면담(15일 가량 소요) → 당사가 상속인에게 승인여부 통지 → 당사와 상속인 간의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 · 훈련 이수

자세한 사항은 『헤나킹』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의 임대 또는 대리경영(예. 귀하가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1) 귀하는 계약기간 중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헤나킹』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만일 귀하가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와의 『헤나킹』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헤나킹』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귀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헤나킹』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09:00 ~ 18:00	주 5일	문의 : 가맹사업부(02-568-8885)

『가맹사업법』 제15조제10호 규정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귀하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점포당 1인 이상을 점포관리자로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점포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 인원은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헤나킹』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독 항목	시 기	위반 시 책임
고객 서비스상태 관리, 품질기준, 상품관리, 위생점검, 재고관리, 매출관리, 각종 설비관리 등	년 2회	상품공급 중단/계약해지 등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해나킹』 영업표지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나킹』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광고·판촉 성격	분담 비율		분담절차	비 고
		본사 부담	가맹점 부담		
광고 · 판촉	브랜드 광고·판촉, 상품 광고·판촉	광고·판촉비 의 20%	광고·판촉비의 80%는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안분	사전 약정 체결 또는 사전 동의 (광고 50%, 판촉 70% 이상) 절차 진행	대중매체광고,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 광고·판촉
	브랜드 광고, 상품광고 및 가맹점 모집광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광고비의 25%	광고·판촉비의 75%는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안분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		
	영업이 부진한 지역의 판촉활동	-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부담	계획공고→명세서 발송→가맹점 부담액 지급	지역에 따라 기간 또는 비용부담을 다르게 진행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방법·시기·횟수 등에 관하여 당사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나킹』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가격부문, 신상품 관련부문, 상품공급거래처, 가맹점 운영 노하우 등으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귀하를 포함한 『해나킹』 가맹점사업자들에게만 제공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2) 귀하는 계약기간 중 알게 된 당사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종료 후 2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해나킹』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 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해나킹』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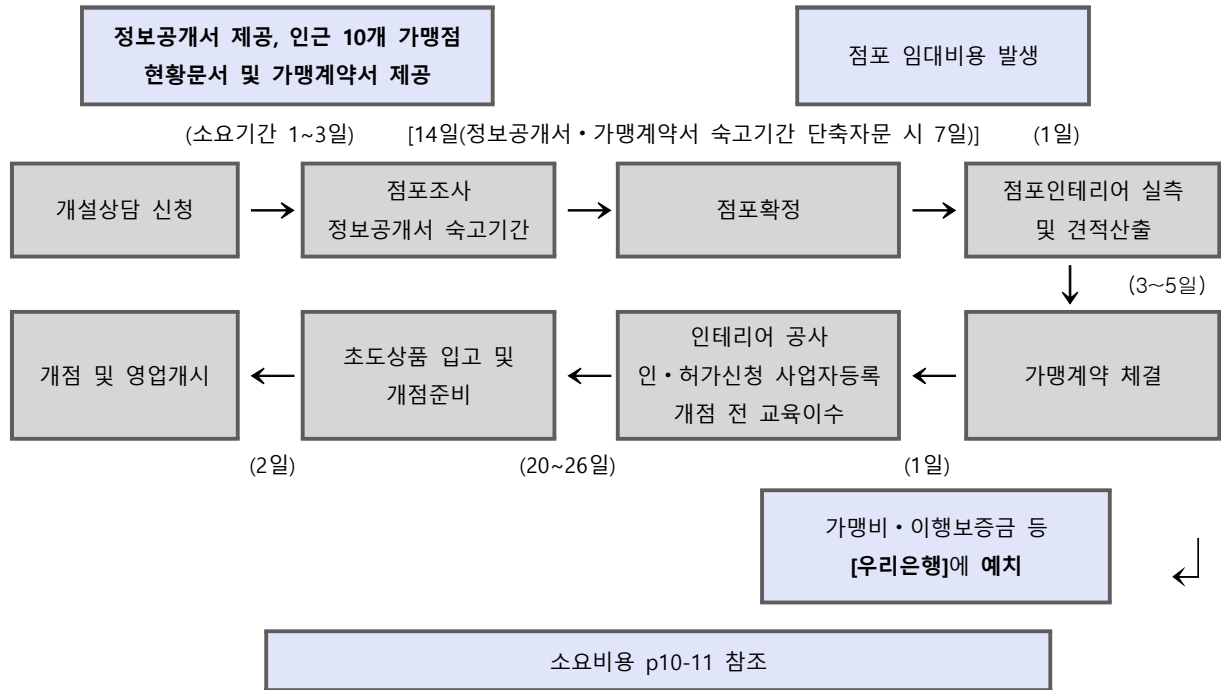
11. 가맹계약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임원 포함)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도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1) 당사와 귀하간의 분쟁의 경우

- (1) 당사와 귀하가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 할 경우, 당사와 귀하의 본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와 『헤나킹』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귀하와 『헤나킹』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당사자는 당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1)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헤나킹』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 항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귀하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총비용의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총 비용의 40%	
	지급 절차		귀하가 점포환경을 개선한 경우	귀하의 비용청구→지급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당사의 부담액 지급.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을 개선한 경우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및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 고		-		

구 분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 항목	귀하가 전체 비용 부담	
	비용 비율		
지급 절차		공사계약 체결내용에 따라 다름	
비용부담 제외사유		-	
비 고		-	

2) 당사가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헤나킹』 가맹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영업표지의 변경
-----	----------

당사	비용 항목	간판, 로고 등 영업표지 교체 비용
부담	비용 비율	협 의
지급 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 고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경영활동

당사는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에게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 고
당사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 방문→경영진단→귀하에게 경영지도→ 귀하가 이행	귀하가 부담	비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귀하 요청 시				

4.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나킹』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경영상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헤나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교육	① 사업 소개 ② 매장운영 및 관리 ③ 사업수익 관리 ④ POS 시스템 교육 ⑤ 상품관련 교육 ⑥ 위생교육	집단강의 및 실습교육	약 5일	필수교육
	① 마케팅 교육 ② 직원채용 및 관리요령 ③ 고객응대 교육			
보수교육	① 고객응대 교육 ② 상품판매 교육 ③ 매장운영 Q&A 등	집단강의 및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교육
기타 교육	해당 가맹점에 필요한 교육	추후 협의		선택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헤나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신규교육	약 5일	1,100	최초 계약 시 이수/귀하 1인 기준
보수교육	추후 공지	실 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귀하가 부담
기타 교육	추후 협의	1일당 330	귀하의 요청 시/숙박비 실비로 지급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 및 가맹점관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 및 가맹점관리자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귀하의 계약갱신 요구 시 당사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을 유의하십시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순 번	지역	명칭	소재지	비고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부 : 02-568-8885

- 『가맹사업법』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또는 **가맹거래과**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 044-200-4010

가맹거래과 : help@ftc.go.kr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http://franchise.ftc.go.kr>

별첨 1. (주)자연가득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